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250]
의견서

2021. 11.

[사] 오픈넷



대표자: 황성기

주소: [우]066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62-9, 402 (서초동, 한림빌딩)

전화번호: 02-581-1643 팩스: 02-581-1642

1.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본 개정안은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정보도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이 인정된 경우 및 추후보도가 이루어진 경우, 권리 침해 주장자의 요청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언론보도(이하 '기사'라 함)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임. (안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2.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추후보도 제도와의 부조화

- 언론중재법은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충돌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한 조정·중재 절차를 통해 양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임.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제도는 이러한 언론중재법의 정신에 기반하여, 기사를 완전히 삭제·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사를 유지하면서 당사자의 합의와 소통을 통해 당시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나 다른 주장, 형사절차의 결과 등 기사 내용에 '이력'을 추가함으로써 양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독자들의 알 권리도 균형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런데 본 개정안은 정정보도, 추후보도 등이 이루어진 기사를 정보통신망(인터넷)상에서 삭제하여 기사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위와 같은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추후보도 제도의 의미를 몰각, 사문화시키는 내용임.

3. 언론,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 침해

- 한 표현물 내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 '평가', '추론' 등을 명백히 구별하는 것은 어렵고, '진실'과 '허위' 역시 시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당시까지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로 분류되거나,

법원의 판결 역시 유죄로 판결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혹은 미묘한 법적 해석의 차이로 무죄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많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잠정적 합의·결정에 기한 정정보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사 자체를 삭제하도록 하는 경우, 공인 및 공적 사안을 둘러싼 의혹 제기의 역사 자체가 지워지게 되고, 이는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높음.

- 또한 개정안은 보도 내용의 ‘일부’가 진실하지 않아 정정보도가 되거나 손해배상이 인정된 기사도 해당 기사 ‘전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정보도, 추후보도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한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이기에 용인될 수 있으나, 일부 내용의 문제로 기사 내의 다른 모든 표현 내용까지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본 개정안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적 조항임.
- 또한 추후보도는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알리는 보도로, 원 보도 내용의 ‘허위성’이 그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삭제 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 특정인이 어떠한 혐의로 형사 수사나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진실이라면 이는 역사적 사실로서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며, 추후 해당 사건이 무죄 등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실은 또다른 별개의 사실이므로, 이를 이유로 과거의 진실한 정보를 삭제, 차단하여서는 안 됨.
- 현재도 기사 내용이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성 보도로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현저한 보도라면 사법부를 통해 기사 삭제 판결이 내려질 수 있고, 손해배상 판결을 통한 간접강제로 원 기사 제공자인 언론사 스스로 기사를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하는 등으로 개인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음. 또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원 기사를 인용하며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라면 현행 임시조치 제도로도 조치가 가능함. 그럼에도 전체적 내용의 위법성이 명백히 판명되지 않은 기사·정보를 매개자인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요청만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본 개정안은 언론,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될 위험이 높은 위헌적 규제임.

4. 결론

- 본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상 제도들과 부조화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언론,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은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함.

<끝>